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352 제출연월일: 2024. 7. 29. 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1항제4호 중 "사용료·수수료·분담금·지방세"를 "사용료·수수료·지방세"로 한다.

제155조를 삭제한다.

제15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 금"을 각각 "사용료 또는 수수료"로 한다.

제157조제1항 중 "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은"을 "사용료 또는 수수료는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"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"을 각각 "사용료 또는 수수료"로 하며, 같은 조 제7항 중 "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"을 각각 "사용료 또는 수수료를"로 한다. 제178조제2항 중 "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"을 "사용료 또는 수수료를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분담금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부과된 분담금

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	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
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	
을 의결한다.	.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	4
사용료・수수료・분담금・지	사용료·수수료·지방세
<u>방세</u>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	
징수	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5조(분담금) 지방자치단체는	<u><삭 제></u>
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	
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	
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	
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	
<u>징수할 수 있다.</u>	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① 사용료・수수료 또는 분담금	① 사용료 또는 수수료
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	
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	
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	
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	
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	
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	

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 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 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 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</u> 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 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
③ (생 략)

- 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지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·수수료</u> <u>또는 분담금은</u>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.
 - ②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수 있다.
 - ③ (생략)

	②
	<u>사용료 또는 수수료</u>
	<u>.</u>
	 ③ (현행과 같음)
제	·
제	③ (현행과 같음)
세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
세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 또는 수수</u>
제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 또는 수수</u>
세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 또는 수수</u> 료는
줴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신청) ① <u>사용료 또는 수수</u> 료는
梸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・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 또는 수수 료는 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
세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・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 또는 수수 료는 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
제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・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 또는 수수 료는 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
레	③ (현행과 같음) 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・징수, 이의신청) ① 사용료 또는 수수 료는 ② 사용료 또는 수수료

- ④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</u>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.
- ⑤ ⑥ (생 략)
-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<u>사용료</u>
 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
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<u>사용</u>
 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
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
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① (생략)
 -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<u>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을</u> 제156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한 범위에서 정할수 있다.
 - ③ (생략)

④ <u>사용료 또는 수수료</u>
⑤·⑥ (현행과 같음)
⑦ <u>사용료</u>
또는 수수료를
사용료 또는
<u>수</u> 수료를
제178조(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
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 ①
(현행과 같음)
(2)
(1)
<u>사용료 또는 수수료</u>
를 <u>-</u>
③ (현행과 같음)

[별지 제1호서식]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 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2	제155조(분담금)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3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제1항 · 제2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4	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장수, 이의 신청) 제1항·제2항 ·제4항·제7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5	제178조(지방자치 단체조합회의와지방 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제2항	지방자치단체 재산 또는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은 사실상 미운영 상태이므로, 분담금 제도 폐지에 따른 재정수입 영향은 미미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제47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제1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2	제155조(분담금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3	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제1항 · 제2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4	제157조(사용료 등의 부과·징수, 이의 신청) 제1항·제2항 ·제4항·제7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5	제178조(지방자치 단체조합회의와지방 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)제2항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

2. 상세 사유

- 현재 5개 지자체^{*}에 분담금 근거 조례가 있으나 부과 실적 없음.

 * 강원 원주시·태백시(농공·산업단지 공동이용시설 분담금), 경북 김천시(치수산업 분담금), 전남 장흥군(시장 시설 분담금), 서울 노원구(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)
- O 대통령 주재, 「비상경제 민생회의」에서 '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' 발표, 지방자치법 상 '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 정비(폐지) 내용 포함

Ⅲ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			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•국장
	김선희	정유근	김성기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선희	044-205-3875	shnnkm1@mail.go.kr